

## 2021년 SPA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 정오표(추가)

[제1권]

p.63. '2.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' 하단, ▶(검.경 수사권조정을 ~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)의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

▶검.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0.2.4. 공포되었으며,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(다만, 제312조 제1항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)

p.116. 관련판례4. 아래에 ▶추가

▶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(2016헌마263)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가 신설되었다(신설 2020.3.24.)

p.120. ㉘㉙아래에 ㉚㉛㉜추가

㉚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,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(기소중지결정·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)을 한 경우에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, 기소중지결정·참고인중지결정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,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(동법 제13조의 3 제1항 : 개정 2019. 12. 31).

㉛ 국가의 안전보장,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(생략×)할 수 있다(동조 제2항 : 신설 2019. 12. 31).

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지유예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(동조 제4항 : 신설 2019. 12. 31).

p.120. key point 바로 위에 ㉝추가

㉝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

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(2016헌마263)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 2가 신설되었다(신설 2020.3.24.)

㉞ 검사는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·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 14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(동법 제12조의 2 제1항).

㉟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·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 14일 이내에 검사에게 보관 등의 승인을 신청하고, 검사는 신청일부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(동법 제12조의 2 제2항).

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승인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종료일부 14일(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)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하고, 법원에 승인청구를 한 경우(취득한 전기통신의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법원으로부터 승인서를 발부받거나 청구기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한다(동법 제12조의 2 제5항).

㊲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한 때에는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등을 기재한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고, 폐기일부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(동법 제12조의 2 제6항).

p.259. 관련판례 5.추가

5.형사소송법 제219조,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. 따라서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·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,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·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(대판 2020.11.26, 2020도10729).

p.316. ㉠‘비용부담’ 아래에 ▶추가

▶재정신청이 이유 없어 재정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비용 등은 그 부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(제122조의2제1호): 신설 2020.6.26.

p.334.

‘처장추천위원회’ ⑤(추천위원회는 ~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)의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

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(제6조 제7항) 개정 2020.12.15.

p.334. ‘수사처검사’ ①의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

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. (개정 2020. 12. 15.)

p.337. ‘수사처장의 재정신청(①~⑦)’ 삭제 (개정 2020. 12. 15.)

p.339. 문2 해설④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

④ 처장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(제30조 제1항), 개정법에서 삭제되었다.

[제2권]

p.215.㉠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: 전체(형사소송법은 ~ 증거로 할 수 있다. 제312조 제1항.제2항 개정)를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

㉠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: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,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.(제312조 제1항).

▶피고인이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312조 제2항 규정은 삭제되었다(2020.2.4.)

▶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조항인 제312조 제1항은 ‘적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,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.’로 개정되었다(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주의!)

p.219. ‘㉠영상녹화물에 의한 입증’과 ‘관련판례’ 삭제

p.219. ㉠를 ㉡로 변경

p.220. ㉠를 ㉡로 변경

p.254.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(3번째칸) '영상물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명'부분을 삭제

p.392. ㉠ '부정기형과 정기형'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

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는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(대판 2020.10.22, 2020도4140 전원합의체).

(예)단기7년 장기15년의 경우 중간형인 11년을 기준으로 함.

- 대법원은 단기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다.